

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(지정·갱신)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개월(갱신은 2개월)
신청인	기관명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소재지	전화번호
설립 근거		설립 연월일
설립 목적		
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 수행 여부		[] 여 [] 부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,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(지정·갱신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첨부서류 (지정신청 시)	1. 정관 1부 2.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.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(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4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20만원 (뒤쪽에 수입인지 붙임)
신청인 (대표자) 첨부서류 (갱신신청 시)	1. 지정서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수수료

※ 수입인지 붙임란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